

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주요 상담 현황

상담일자	상담내용	답변내용	처리현황
2022.04.19.	본원에 내원중인 환자가 금품 제공하려고 함. 이에 따른 대처 방법 및 신고 절차 문의	강원대학교병원임직원행동강령 제34조(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) 제1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 등 신고서 제출요청. 또한 제34조 제1항에 따라 감사실은 금품 등 인도확인서를 작성하여 인도자와 인수자의 확인을 통해 금품을 처리해야 하며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·공익단체에 기증하거나 병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할 예정.	완료
2022.4.25.	외부강의등의 신고 대상 범위와 신고 방법에 대해 문의	강원대학교병원임직원행동강령 제26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을 참고하여 신고 범위와 금액을 참고하여 그룹웨어 '외부강의등 신고서' 양식을 참고하여 관련 내용을 작성하고, 신고 시 더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연락 바람.	완료